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7
----------	-----

제출년월일 : 1999.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중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해 판매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도모와 쓰레기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지 않을 경우 수거를 지연하는 등 유예기간을 삭제하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안 제5조)
- 나.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특정하게 지정하던 것을 읍면동사무소 및 일반상가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안 제8조)
- 다. 봉투판매인의 시설기준, 영업상 의무조항을 규제정비 차원에서 삭제(안 19조)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및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연탄제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1항중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를 “각 읍·면·동사무소 및 일반상가 등에서”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은 폐기물배출자의 생활권역내의 일반상가등에서 수익율등의 사유로 인하여 쓰레기봉투 판매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리·반장 및 부녀회장에게, 공동주택은 대표·관리사무소장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제8조 제1항에 의한 판매 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중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를 “상점등에 쓰레기봉투를 비치하며”로 한다.

제17조·제18조·제20조 및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18조로, 제23조·제24조를 제19조·제20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를 제17조로 한다.

[별표5] 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쓰레기종량제가 정 착될 때까지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및 파주시폐 기물관련과태료부과 · 징수업무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 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및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 징수업무에 관한조례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연탄재와 재 활용가능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 레기 전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 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 봉투 판매 인(이하“봉투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 여할 수 있다.(개정'96.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 레기 전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 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 봉투 판매 인(이하“봉투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 여할 수 있다.(개정'96.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 각읍 · 면 · 동사무소 및 일반상가 등에서 ----- ----- -----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신·구문대조표

현	개 정 안
(신 설)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대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생략) ② (생략)	⑤시장은 폐기물배출자의 생활권역내의 일반상가등에서 수의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쓰레기봉투 판매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리·반장 및 부녀회장에게,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대표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제8조제1항에 의한 판매 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 상점등에 쓰레기봉투를 비치하여,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봉투판매인이 아니거나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는 판매인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리·반장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제8조제1항에 의한 판매 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④시장은 봉투 판매인의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 제)	

신·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봉투판매인은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 요율표를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삭)	(삭 제)	
②봉투 판매인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쓰레기 봉투 판매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삭 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봉투판매인은 시장이 지정한 자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1. 폐업,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판매소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2. 지정을 받은 봉투 판매인으로부터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20조(봉투판매인의 지정 취소) 시장은 봉투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봉투 판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삭 제)		
1.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3. <u>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4. <u>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봉투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임의로 타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때</u> 5. <u>주민이용불편 또는 각종 비위를 범했을 때</u> 6. <u>시장이 정한 봉투 대금을 1차 독촉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u> 제22조(보고 및 관리대장 등의 확인) ①시장은 쓰레기 봉투 및 봉투 판매인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봉투 판매인에 대하여 관제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5)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제8조 관련)			
		(삭 제)		
				(삭 제)

신·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 (생략)		제18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3조 (생략)		제19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4조 (생략)		제20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